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808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가소27529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 완구(캐릭터 인형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 또는 "D"라는 명칭 또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소매업체를 상대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나. 원고의 캐릭터 제작 및 저작권 등록

원고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F'(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은 2020. 3. 경부터 2021. 4.경까지 G에서 방영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등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각 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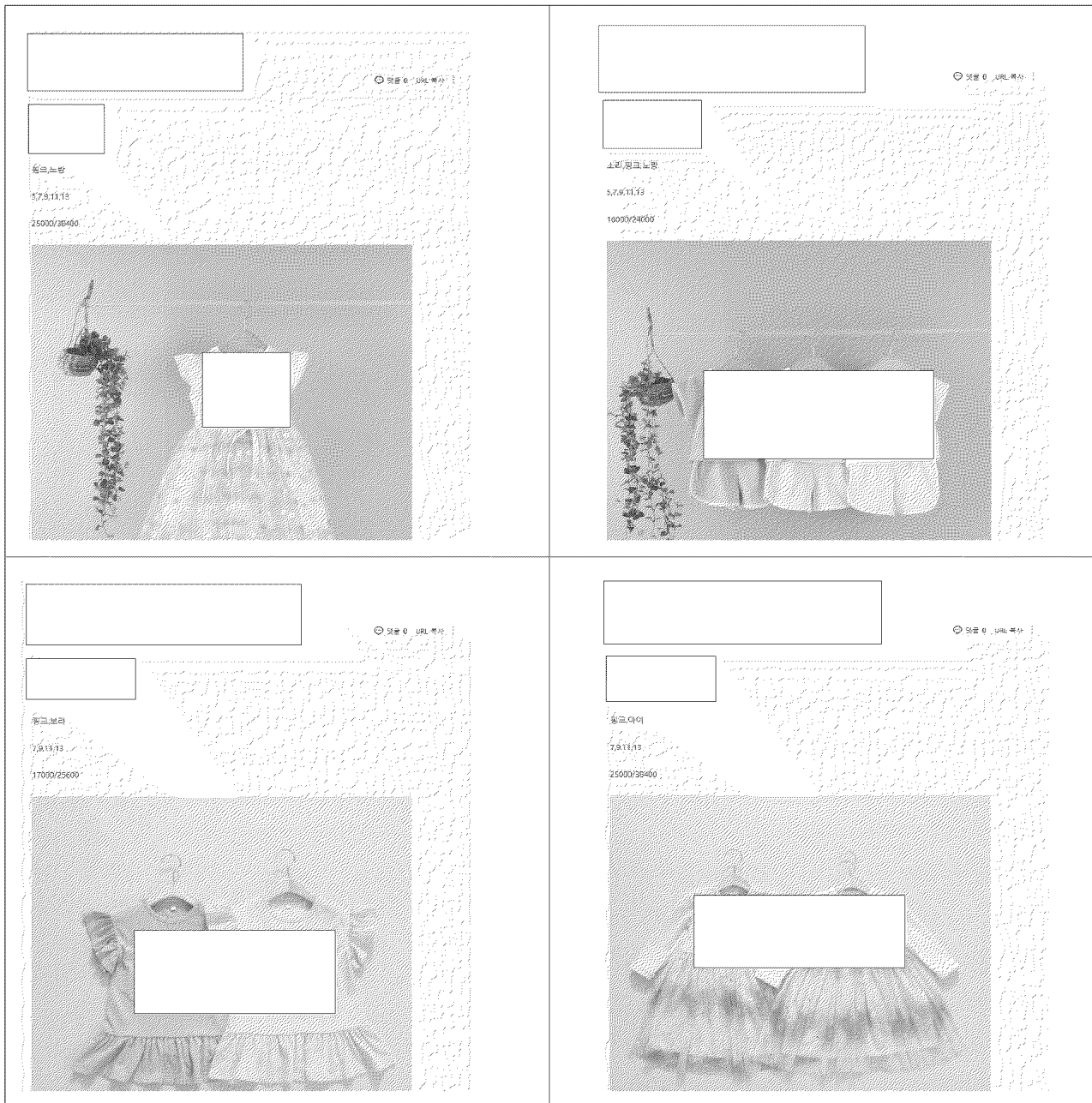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8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3. 10.경부터 2024. 3.경¹⁾까지 이 사건 카페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 상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다.²⁾

이 사건 상품 중 일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피고가 2024. 4. 8.에도 판매글을 올렸으나(갑 제3호증), 실제 판매로 연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2) 원고는 2021. 12. 18. 피고가 이 사건 상품 판매 게시글을 최초로 올렸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구 저작권법(2026. 2. 10.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나. ①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상세한 수익과 원고의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상품 판매기간이 6개월 정도인 점, ③ 피고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2023년도의 경우 587,486원, 2024년도의 경우 5,080,922원이고(을 제8호증), 여기에는 다른 상품의 판매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하나의 제품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여럿 복제되기도 하여 침해행위 수와 침해 저작물 수가 비례하지는 않는 점, ⑤ 피고가 제품판매내역(을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AN'로 검색한 결과이고, 피고는 'AO'와 같이 'AN'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명으로 판매한 바도 있으므로(갑 제3호증),



위 제품판매내역이 실제 판매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그 외에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수량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추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⑦ 원고는 2024. 1. 12. 경고장을 발송하여 피고가 2024. 1. 15. 이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상품을 계속 판매하였다거나, 피고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항소이유서, 7면), 이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8

판사 정인재

판사 김기현